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17
----------	-------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서천호 · 조인철 · 임종득
김소희 · 박덕흠 · 신성범
김선교 · 안철수 · 엄태영
김기현 · 김종양 · 김장겸
조지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외 조합원이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은 어촌계 운영과 어촌공동체의 유지·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그 지위와 업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어촌계장의 지위·업무·임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어촌계장)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되는 어촌계에는 어촌계장을 둔다.

② 어촌계장은 어촌계를 대표하고 어촌계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어촌계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의 수산업·어촌 관련 시책에 대한 협조

2. 어촌계원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어촌계의 원활한 운영과 어촌계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④ 어촌계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장에게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촌계장의 임기 및 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어촌계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 차례 이상 연임 중인 어촌계장은 제15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5조의2(어촌계장)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되는 어촌계에는 어촌계장을 둔다.</u></p> <p><u>② 어촌계장은 어촌계를 대표하고 어촌계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u>③ 어촌계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외 수산업·어촌 관련 시책에 대한 협조</u> <u>2. 어촌계원의 의견 수렴</u> <u>3. 그 밖에 어촌계의 원활한 운영과 어촌계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u> <p><u>④ 어촌계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u>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u></p>

에서 어촌계장에게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
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